

수신: 이대훈 협동사무처장
발신: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새 정부에서의 인권정책 방향과 민간단체의 임무

1. 김영삼 정권의 인권정책 평가

김영삼 정권은 30년간의 독재정권 이후 등장한 민간정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김영삼 정권은 다음과 같은 인권적인 과제를 지고 등장했다.

첫째,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산작업이었다.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대공분실 등을 비롯한 공안기구에서 횡행했던 고문과 광주 시민등에 대한 대량 학살과 삼청교육대 같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취했어야 했다. 이런 과제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과거 군사독재의 어두운 인권유린을 놓았던 구조적,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국민화합을 꾀하고자 노력했어야 했다.

둘째,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했어야 했다.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인권의 신장을 저해하는 악법들을 국제인권 수준에 맞도록 개폐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했다.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악법들, 특히 80년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던 악법들을 과감하게 손질하여 인권유린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방지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조약 등의 인권조약들을 국내법에 우선 적용하고, 이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적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이다.

셋째, 사회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 사회권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수준이 세계 100위 이하를 밀도는 상황이고 국민소득 중 겨우 0.9%만이 사회복지에 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회권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노동, 건강, 교육 등을 보장한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권리의 확대는 사실상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등장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에 만연한 부의부 빈의빈의 구조 타파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재우너를 마련하고 이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 또는 인권 계몽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반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행동을 위협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권의 내용을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 민주 정부라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인권을 알려주고 이를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제인권조약에서 인권교육과 홍보에 대해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제를 안고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거의 인권적인 과제를 도외시했으며, 과거 야당 시절에는 주장해 마지 않았던 악법과 인권유린 기구들의 철폐 등의 약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 나아가 과거 군사독재자들의 애용했던 악법과 기구들을 동원하여 민주세력과 권리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되어 결국 김영삼정권은 문민정부의 탈을 벗어 던지게 되었다. 이로써 냉전체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틀을 고민하는 국제사회에서 다시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그대로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미래를 향한 내적인 변화를 차기 정권에게 넘기게 되었다. 차기 정권에서는 김영삼정권에서 제기되었던 과제에 대해서 더욱 늘어난 인권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 김대중 정권의 인권개선 약속

김대중씨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선 공약집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 관련 공약들을 약속했다.

물론 공약사항에 대해 인권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약집에 실린 공약들을 분류하여 보면 기본방향으로 ①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 ② 여성전담부의 설치, 각종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신장 등 남녀평등의 참여사회 구축 ③ 균형있는 분배정책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④ 노동관계제도의 국제수준화, 노동복지의 확충,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⑤ 문화예술에 대한 겸열제도의 폐지, 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정책 항목으로 ①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확대,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성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미결구금자의 변호인 접견 및 교통권 보장, 재소자의 접견제도 개선, 기결수의 재활프로그램 확충, 행정시설의 확충 및 전문화, 컴퓨터 전과관리제도의 개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민대화합 차원의 대사면 단행, 국가보안법 존속 등이 잡혀 있었다. 사법제도의 민주화와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의 약속은 획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속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으로 해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문제는 “한국의 인권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여성할당제, 여성경제활동 참여, 모성보호, 아동양육과 학교급식, 여성복지, 평등한 가족관계, 남녀평등의식의 정착, 성폭력예방, 여성영역의 확대, 여성전담부서의 설치 등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들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여성계에서 주장하던 많은 내용이 공약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권인수위원회 등에 여성할당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중요 위치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는 등 기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여성계가 벌써부터 의심의 눈치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2002년까지의 주택보급률 100%로 1가구 1주택 확보,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복지예산의 매년 30% 증액을 통한 삶의 질의 선진화, 사회복지기본법 개정, 국민복지기본선 설정,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의 100% 보장, 사회보험 체계 현대화, 공적연금제도 통합, 의료보험 통합, 경로연금제의 확대와 노인보건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화시설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즉, 매우 의욕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사회보장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며, 이에 대해 공약의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므로 불투명한 약속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와 관련하여서는 ILO 조약의 단계적 비준, 노동자의 경영참가 확대,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참여권 확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기본권의 국제수준으로 개정 보완, 고용보험 확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조정, 각종 사회보험 운영기구에 노사대표 참여의 폭을 넓힘, 노조산별체제 전환 지원, 임시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를 극복 프로그램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예상되는 실업자의 양산 등으로 보아서 이런 공약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⑤와 관련해서는 자진삭제와 상영금지가 없는 완전등급분류제 도입, 민간이 주도하는 전문인 중심의 자율적인 심의기구 구성,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하던 많은 부분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을 정비하여 청소년 인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대강 살펴본 김대중 정권의 인권관련 공약을 보았을 때 이전의 정권과는 달리 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의식도 제대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은 특히 사회권 분야에서 약속된 많은 부분의 유보를 강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권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또, 우리나라의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선거철에만 표를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가 이후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곤 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이 공약만으로는 김대중 정권이 인권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

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초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요구하는 사회전반의 보수화 경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와 저지를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될 것으로 보여 집권 초기를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 이후 추진되어야 할 주요 인권과제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차기 정권에서 힘을 집중할 것인가.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1) 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일제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거의 과거청산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과거의 악순환이 재생산됨으로써 인권의 신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침해자에 광범한 불처벌(impunity)이 결국 과거 인권침해자들이 다시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인권침해를 온존시켜 가는 구조는 시급히 타파해야 할 과제며, 인권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의를 세우는 일,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 바로 과거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과거청산은 매우 중요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미 전·노씨 등 핵심 과거인권유린 가해자들이 석방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과거인권유린 문제는 진실규명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국가)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치범의 석방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조작간첩사건, 장기구금중인 장기수를 비롯한 정치범들의 전면적인 사면은 우선적인 과제다. 사상·양심의 문제로 인한 정치범(양심수)은 우선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복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정권 하에서 억울한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석방된 정치범들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특히 보안관찰법에 의한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2)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노씨 등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많다. 아직껏 정부와 민간을 통해 백서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백서 작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실규명에 근거하여 미흡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학살에 동조했던 현장 지휘자까지 포함하여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재산의 몰수, 서훈의 완전 치탈 등의 조치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물량 투입 중심의 기념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기념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진실규명위원회를 민관 동수로 구성하여 일제 때부터 미청산으로 남아있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의 추적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 해방 이후 4.3을 비롯한 학살만 행과 박정희 정권 아래 자행되어 왔던 의문사, 삼청교육대, 고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유린에 대한 광범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이를 백서로 꾸준히 발간해야 한다. 동시에 반인도적인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인권조약의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그들의 피해를 국가 배상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의 인권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들고, 교과서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며, 민주열사들에 대해서는 묘역을 조성토록 한다.

(2) 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

1) 유엔의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유엔이 권고하는 바대로 독립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민인권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최대의 인권침해자는 국가권력이므로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 사법부와는 별도의 국민인권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인권기구에는 민관이 동수로 참여하고,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법 개선안에 대한 제안,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선도자로서의 역할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 22조를 비롯한 여성차별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아동권조약 등의 유보조항을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제인권조약에 권고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권침해국이란 오명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단체들과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를 통한 국제인권조약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대표적인 조약인 87호와 151호 조약에 대해 조속히 가입하고 이 조약들에서 규정한 바대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보장을 보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개도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시급성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준과 더불어 이에 대한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4)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 우선 적용

우리나라 정부는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도 이를 준수하는 데는 매우 소홀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이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외교적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근거가 되어 왔다.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과 규정을 국내에서도 적용, 이에 위배되는 국내법에 대해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한다.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4항과 함께 국제인권조약에 위해 되는 모든 법률을 개폐토록 해야 한다. 특히나 사상,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위한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며,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원상회복 등의 사업이 중요하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고, 정부와 국회 안에 인권관련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도적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도 철폐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형법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법률들의 개폐작업은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3) 사회권의 전면적인 보장 및 확대

1)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 관련 조항을 적극 해석하여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사회권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사회권의 확보 및 보장을 위한 하위 법률들을 제정해야

하며,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균축으로 정부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에 대한 전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한다. 장애인의 생활과 교육을 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의무고용비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생활보장비를 증대하고, 이들의 기준을 완화, 확대한다.

3) 주거권의 보장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빈민들의 주거권은 철저히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철거용역회사의 철거폭력은 철거현장에서 상존하는데, 철거 이후의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모는 현재와 같은 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철거는 명확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민들의 합의로 시행하고, 조합주택의 비리를 근절하며, 입찰회사와 철거용역은 인정치 않는다.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고, 입주할 때까지의 생활을 보장할 대책을 세운다.

4) 교육권의 보장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의무교육의 경우 기본적인 교재비 등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여 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 대학 진학을 원하는 이들이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교육은 전면 금지한다.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등의 교육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감소 조치를 중단하고, 소수의 학생들에게도 도시 지역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5) 건강권의 보장

단계적으로 기본 사항에 대한 병원진료를 무료화한다. 의료보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고, 현재와 같은 재산세 중심의 의료보험비 납부 방식은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불리함으로 이를 지역의 보와 직장의 보를 통합 운영하며, 이 기금의 전용을 금지한다.

6) 문화적인 권리의 보장

문화적인 창작물에 대한 어떠한 검열도 철폐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으로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작을 고취한다.

(4) 인권교육 및 계몽

1) 인권교육의 제도화

국가에서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한다. 인권교과서를 각급 학교 수준에 맞도록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전담할 교사들을 육성한다.

2) 인권교육의 생활화

학교 이후의 사회교육 내에서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도록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문화센터의 강좌 중에 인권강좌가 포함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3)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수사공무원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우선적으로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민간단체에서 담당토록 한다.

(5) 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1) 형사절차의 민주화 정책 강화

“~~영장실질심사제가 국가보안법 피의자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 것을 개혁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전면화하도록 한다.~~ 인신구속과정에서 절차상 수사기관의 불법성이 인정되거나, 수사 공무원의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호소가 있을 경우 피의자를 우선 석방한다. 수사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수사공무원은 중별에 처하도록 하며, 공직에서 완전히 추방한다. 이를 위한 재심사유를 끼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특히 노약자와 소년범의 경우 변호인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수사 참여권을 인정한다.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정한다.

2)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한 공권력 남용의 방지

정치적 중립성,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특별 검사는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명하고, 그 해임도 국회 동의가 있으므로 시기에만 가능토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와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검사제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여기에는 중립적 민간인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한다.

(6)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1)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면적으로 보호할 대책을 세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수사기관의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는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한다.

2)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전면적인 폐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며,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토록 한다.

3) 지뢰금지조약의 가입

지뢰금지의 예외지역으로 한반도를 인정하려는 미국과 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 지뢰가 존속한다면 세계적인 지뢰금지운동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므로 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4) 알권리의 확대, 공보처 폐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극히 일부 국가안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엄히 처벌토록 한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뒤따라야 하며, 국민주 방송의 설립 허가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인 공보처를 폐지토록 한다.

5) 국가폭력의 예방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무기사용 방법, 절차,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 토록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여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행형법을 개정하여 재소자에 대한 징계시 재소자의 변호권 및 이의권을 인정하며,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유예 석방시 법정에서 즉시 석방토록 한다.

3. 결어

현대는 인권의 시대다.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는 국가안보가 우선적인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심각히 고민하게 되었다. 환경, 개발, 평화라는 인류사적인 과제를 관통하는 위치로서의 인권은 이제 무슨 논리로도 유보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그 사회 성원들이 자신들의 인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사회다. 국가의 원시적 폭력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NGO)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전 정권에서 인권개선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비단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처럼 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민간단체들이 인권증진에 대한 확고한 프로그램이 없이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연대, 미미한 영향력만으로는 의미있는 인권의 개선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민간단체간의 연구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공유가 이뤄질 단위의 구성과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이후 정권에서는 정부와의 협력부분들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이나 정당 등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해 인권을 증진시킬 이 사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임.